1 안전관리 조직도(전사)_修正(案)

㈜세경하이테크

안전 보건 조직도

2022. 01. 0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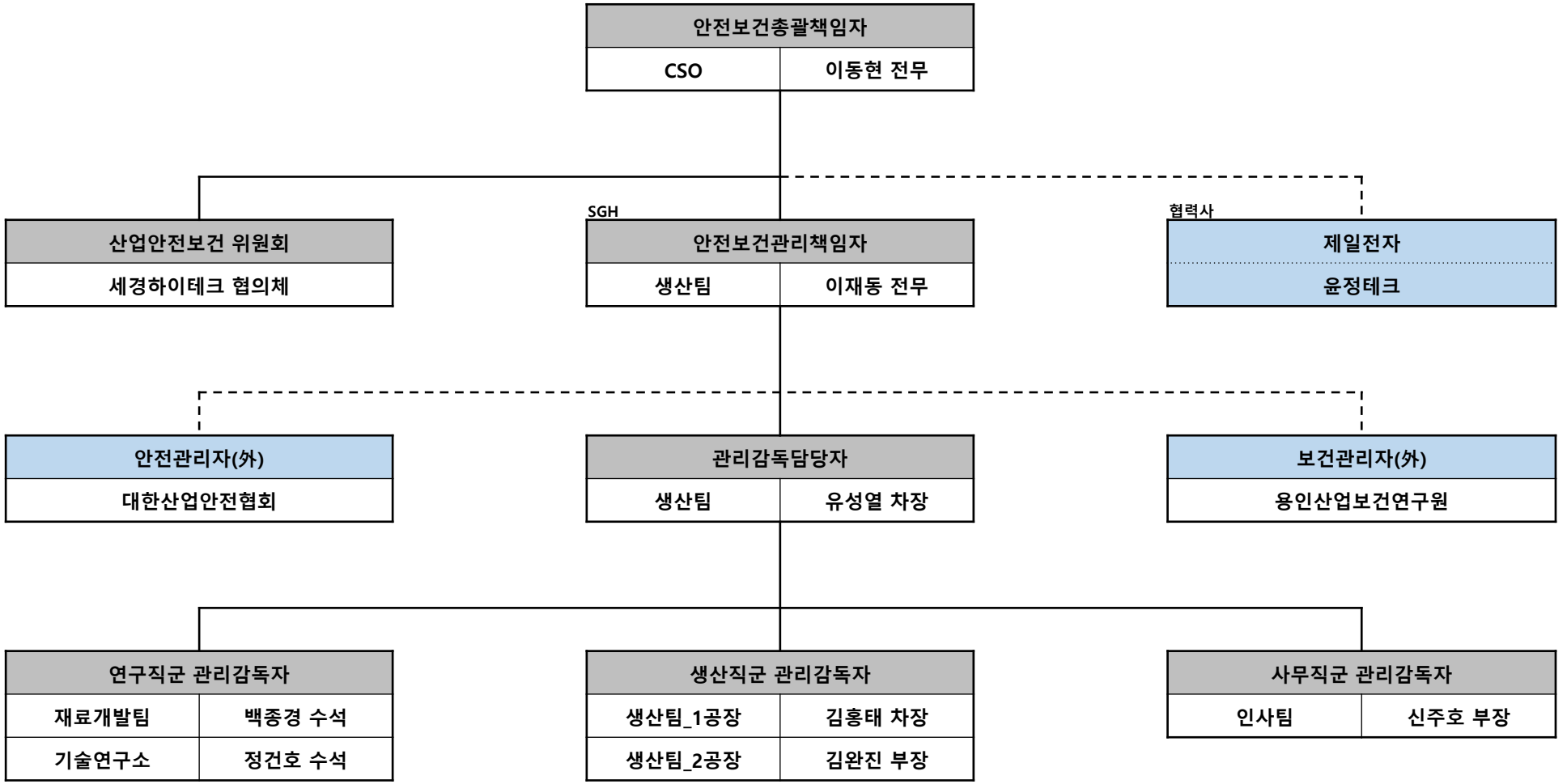

SEGYUNG HITECH
SEGYUNG HITECH Co.,Ltd.

2 직급별 직무사항

1. CSO [안전최고책임자_ Chief Safety Officer]

-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/조직/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의무이행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

2. 안전보건총괄책임자

1)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2)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
3)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
4)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・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
5)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

3. 안전보건관리책임자

1)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)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) 근로자에 대한 안전·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4)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)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)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7)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8)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9)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・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4. 관리감독자

1)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(이하 "해당 작업"이라 한다)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2)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・사용에 관한 교육・지도
3)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4)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・감독
5) 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・조언에 대한 협조
6) 위험성 평가 유해・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
7)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3 업무 활동

1. 점검

1) 자체점검 : 관리감독자 주관 일 1회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(ex, 설비일상점검Sheet, 환경안전 순회점검표)
2) 외주점검 : ① 안전관리자(外) 주관 월 2회 사업장 전체 안전 점검
② 보건관리자(外) 주관 2개월 1회 사업장 전체 보건 점검

2. 교육

1) 정기교육
① 사무직 : 분기별 3시간 이상
② 사무직 外 : 분기별 6시간 이상
③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: 연간 16시간 이상
2) 채용 시 교육 : 8시간 이상
3)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: 2시간 이상

3.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

1) 위험성 평가
- 유해・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,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함.
→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 전사 참여, 반기 1회 이상
2) 작업환경측정
- 소음, 분진, 유기용제, 중금속 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.
→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외부 의뢰, 연 1회 이상

4. 회의

1) 격주 1회 : 안전관리자(外) 내방 점검에 따른 실무회의
2) 월 1회 : CSO 주관 월간점검 회의
3) 분기 1회 :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

#별첨 :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

1. 산업안전보건법

1) 안전조치 의무

① 프레스 ·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

② 굴착 ·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

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잇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

2) 보건조치 의무

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

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

③ 환기/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

2. 중대재해처벌법

- 종사자에 대한 안전 · 보건 확보 의무

①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
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
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

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